



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766 / 교무실 063-534-2005 / 행정실 534-2013 / <https://school.jbedu.kr/jb-daeheung>

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

전라북도교육청의 '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'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5년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계획

I 목적

-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
- 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
-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

II 근거

-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(안전사고예방)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

III 사업 개요

1. 지원 대상

- 학교안전사고 당시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로 저소득층 가구* 학생
 -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※ 저소득층 가구 유형

가구유형	내 용	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	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	
법정 차상위 계층	차상위자활 대상자	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
	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경우 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등)
	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	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(아동)수당을 받는 경우
	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	·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
	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	·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·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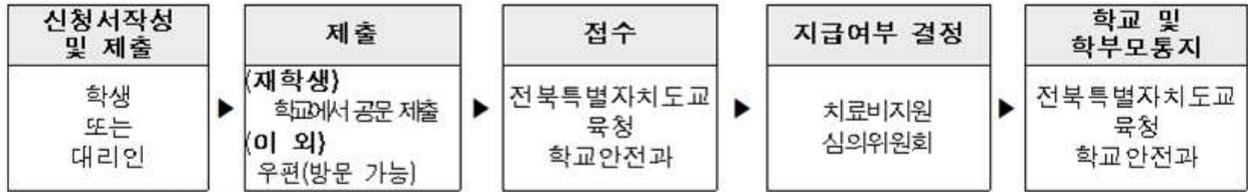
2. 지원 내용

- (지원범위)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치료비 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으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른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
- (적용시기)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. 1. 1.부터
- (지원금액)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후 지원
- (지원 제외사항)

. [중복지원 제외] 법령이나 다른 조례,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
 . 미용시술, 치아교정, 부대비용(예시:상급병실료, 제증명료 등),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제외

3.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

○ 신청·지원 절차



○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(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의 서류)

신청주체	▪ 해당 학생 또는 대리인(학생을 법률상·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)
신청방법	▪ {재학생} 구비서류를 학교로 제출 ▪ {이 외} 우편(수신처: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)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작성서류) [별지 제1호서식]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 [별지 제2호서식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[별지 제3호서식]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 [별지 제4호서식] 타기관 의료비 지원금 수령 약약서 ▪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▪ 재난적의료비 결정 통보서,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결정 통보서 등 ▪ 법정저소득층 증명서류 ▪ 실손해보험 미가입내역(‘내보험찾아줌’ 조회결과) ▪ 학교안전공제회 지급내역(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) ▪ 진료비 증빙서류(진료비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약제비계산서, 수술기록지 등) ▪ 본인(학생)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※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(시효) 학교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구 불가

4. 대상자 선정 및 지급

○ (선정절차)

-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여부 심의
-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결정

○ (지급방법)

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
-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
IV 안내사항

[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]

-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치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
- 대상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소 등 저소득층학생 치료비 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, 지급결정통지 후 우리청 저소득학생 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도록 안내 (이중지원 방지)

[개인정보 보안 철저]

- 치료비 지원 신청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치료비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보안 철저

【붙임】 신청 서식 1부.

2025. 7. 17.

대 흥 초 등 학 교 장